

신규 품목 지원기준

■ 품목명 : 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

1. 목적

- 철판의 모서리 등을 굽혀 가공는 절곡기를 취급하는 작업 시 금형 사이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다발하므로 절곡기 금형을 고정/해제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자 함

2. 적용 대상

- 위험기계·기구에 해당하는 절곡기로서 상부금형의 고정을 나사조임 등 반복적인 인력작업이 요구되는 형태의 금형고정장치를 가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절곡기에 적용한다.

※ 파이프, 봉재 등 철판 형태 이외의 것을 절곡(Bending)하는 기계는 대상이 아님

3. 금형 신속고정장치의 기능

- (유압식) 절곡기 상부금형을 절곡기 램(Ram)*의 금형홀더에 고정/해제하는 방식이 유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* 램(ram) : 절곡기에서 철판을 절곡하기 위하여 상하 운동을 하는 부분

- (기계식) 절곡기의 상부금형을 윈터치*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고정/해제하는 장치를 말한다.

* 수동레버, 버튼 등 간단한 조작으로 고정/해제가 이뤄지며, 절곡기의 금형홀더는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홀더별 각각 조작하여 고정/해제 할 수 있다.

4. 보조지원 포함 범위

- (유압식) 금형홀더 및 유압유니트(Unit) 등 설치비
- (기계식) 금형홀더
- (공통)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금형에 이탈방조치를 위한 가공비

※ 신규 금형 구매는 지원하지 않음

5. 금형 신속고정장치 안전 요구사항

- (유압 계통) 금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압이 불시에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(역지밸브)를 설치하거나, 램의 상하운동 한 사이클마다 유압유니트가 작동하여 금형 고정압력을 보충하여야 한다.
- (유압 배관) 절곡되는 철판의 굽어지면서 철판의 모서리에 유압배관이 베 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램의 전·후면에 노출되는 유압배관은 금속배관을 사용하거나, 유압호스인 경우 금속덮개로 보호되어야 한다.
- (금형이탈방지 조치) 상부금형의 고정을 해제(유압 Off, 기계적 풀림) 하는 경우 금형이 금형홀더에서 스스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형 이탈방지조치* 구조(홀, 홈 등의 가공) 여야 한다.

* 상부금형의 고정이 해제 되었을 때, 금형이 금형홀더에 걸려 있는 채로 유지 되어야 하며 작업자가 금형을 인력으로 떼어내는 방식 이어야 함.

5 보조지원 기준가격

[실거래가 적용하는 경우]

- 기존에 거래한 실적(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) 5건 중 최저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함

※ 단, 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는 최근 3년 거래 중 최저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

[제조/공사원가계산 적용하는 경우]

- 설치 및 제작작업이 수반되어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제조/공사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원가계산결과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함

-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(원가계산전문기관 작성비용 일부)

■ 원가계산전문기관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[단위: 만원]

공사금액(소요금액)	3천만원 미만	3천 ~ 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계산 인정금액(공단)	50	70	100

※ 수입품의 경우 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 따라 수입관련 서류 확인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.

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 사진 예시



신속 고정장치가 없는 절곡기



유압식 신속고정장치



기계식 신속고정장치